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000호

기 공고한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8호, 2025.2.28.)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 7. 1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변경 내용

① [조기접수 시행] 사업예산 확대에 따라 접수일정 조정

- 3차접수 조기 시행(7/21~ → 7/14~)

② [지원비율 상향] 신규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비율 조정*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비율	80%	65% <small>* 공공기관 포함</small>	35%

* 본 공고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 대상 한시적 상향 (기발급 추천서 소급 불가)

주요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반드시 공고 전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 예산 : 426,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자금 용도	예 산
생산 및 시설자금	424,300
운전자금	2,000
합 계	426,300

* 지원 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자금 용도

구 분	내 용
시설자금	<p>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 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p> <p>-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제외</p>
생산자금	<p>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p>
운전자금	<p>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p> <p>- 동일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운전자금 미상환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p>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 제44조

□ **지원대상 상세**

※①~④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에 지원

① **자금신청자 요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대기업	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기업 중 'RE100 참여기업'인 대기업
공공기관	발전사업용 설비를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② **시공 및 자금신청 절차 관련 요건**

① **착수일은 전년도 8월 이후('24.8.1. ~)여야 하며,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추천**

- 착수일은 자금신청자가 시공업체와 계약한 일자(서면계약서 계약체결일)를 의미

②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은 착수일 이후여야 함**

- 공사개시일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등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 서류* 상의 공사개시(시작)일을 의미
 - * 10MW 이상의 발전소 설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인가 대상
- 자금집행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의미하며, 자금집행 일부가 전년도 7월 이전(~'24.7.31.)일 경우 해당 금액은 지원 제외

③ **(발전사업인 경우) 자금신청일은 공사신고일 이후여야 함**

- 공사신고일은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 서류의 발급일을 의미
 - *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제출은 동 접수분에 한해 한시적 면제

③ 설비 요건

- KS인증 제품사용 의무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₂/kW이하)에 한하여 지원
- 단, 최초 공고일 이전 공사계획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년도 탄소배출량 충족(670kgCO₂/kW이하) 모듈을 사용하더라도 참여 가능

④ 발전설비 분야별 요건

-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본 공고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 대상”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하며,
- 비태양광(풍력, 연료전지 등) 시설자금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정하는 대상을 지원하며,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함

□ 지원 제외대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7] 금융지원 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지원 제외로 결정한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
 - ** 동일 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

□ 지원 조건

자금 용도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시설 자금	풍력 분야	75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	중소기업 (개인 및 협동조합) : 80% 이내 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 : 65% 이내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 (자가소비) : 35% 이내
	태양광 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원	15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별로 최초 추천년도의 지원한도액을 개별 적용하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원한도액을 자금 용도별 지원한도액의 1/2 이내로 함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추천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함(자금 추천은 100만원 단위)
 - 자금 용도별 지원규모,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지원시기 등은 자금추천 상황과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상시접수 및 우선지원 대상*은 해당 지원비율에 5%p 상향** 함
- *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 따른 상시·우선접수 대상에 한함
- ** 중소(개인 및 협동조합) 85% 이내, 중견(공공기관) 70% 이내,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 40% 이내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

1. 상시접수 대상 (1차 접수기간 ~ 예산마감시)

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태양광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
 - * 센터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에서 발급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자가소비 : 자금신청자, PPA 및 REC : 계약상대자(RE100 이행기업))
- 자가소비 :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전기소비자(대기업 포함)
- 전력구매계약(PPA)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기 판매 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계약 체결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대기업 제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량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에 판매하는 발전사업자(대기업 제외)
 - * REC 판매 발전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건축물대장 등재된 시설에 한함)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세부 지원기준

- 발전소 용량은 100kW 이상, 계약(설비) 유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발전소 준공(상업운전개시 등) 이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2 마을 태양광

마을 태양광

□ 지원대상

-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 * 기초지자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자치구,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우선지원 : 햇빛두레 발전소
 - *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에 따라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정서’ 제출 시 마을 태양광으로 인정함

□ 세부 지원기준

- 협동조합의 구성원 : 10인 이상
- 설비용량 : 300kW 이상 1,000kW 미만
- 지분참여 가능용량 : 개인당 설비용량 30kW 이상 100kW 미만
- 발전소 소재지 :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는 기초지자체에 소재하여야 함
 - 마을태양광에 대해 이격거리를 면제하는 기초지자체도 해당
 - 소관 기초지자체로부터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 준수* 대상 또는 이격거리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함

* 이격거리 기준 준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2]의 비고 16의 2)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주거지역 100m, 도로 0m 이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격거리 기준 미준수라 함은 이격거리 기준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모든 경우를 말함

- 협동조합의 소재지 :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기초지자체에 있어야 함
- 조합원 거주지 :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은 공고일 기준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기초지자체에 거주(주민등록 1년 이상)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50% 이상은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행정동에 거주(주민등록 1년 이상)하여야 함

3 고정가격경쟁입찰 태양광

고정가격경쟁입찰 태양광

※ 주의사항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 본 공고와 별개로 해당 기준* 확인 요망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등

□ 지원대상

- 정기접수 대상 1~3 중 하나에 해당하며,
- '24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선정 사업자 중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발전사업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세부 지원기준

- 경쟁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배분된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매매계약서는 한국전력거래소 REC 시스템에서 체결된 계약서 인정

□ 지원제외

-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24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2. 정기접수 대상 (본 공고문 신청기간 차수별 접수일정 참조)

① 산업시설(산업단지 · 공장) 태양광

산업단지 태양광 (우선지원)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 세부 지원기준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부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입주기업 확인서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함
 - 단, 신청자의 신용,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공장 태양광

□ 지원대상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세부 지원기준

- 공장 용지의 경우, 공장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함
 - 단, 신청자의 신용,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2 도심(건축물·시설물) 태양광

건축물 태양광

※ 주의사항 ※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1 산업시설 태양광' 신청
- 신청대상 설비 중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 공고와 별개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1]

□ 지원대상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 부속시설물 :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적법한 시설물에 한함)
- 우선지원 대상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적용한 경우 (KS C 8577 인증제품 사용)
 -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 공영주차장*에서 발전사업하는 경우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세부 지원기준

- 공장설립 승인* 미대상인 경우에 본 건축물 태양광으로 지원 가능함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 시설물을 포함함
-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
-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함
 - 단, 신청자의 신용,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제외대상

-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및 농·어업 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지원 제외
- 공공주차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시설물 태양광

※ 주의사항 ※

- 신청대상 설비 중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 공고와 별개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1]

□ 지원대상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설치한 설비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에 따른 “기존시설물”, “부설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차단형매립시설”

○ 우선지원 대상

- 공영주차장*에서 발전사업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세부 지원기준

- 시설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로부터 임차하여 신청 가능
- 단, 신청자의 신용,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제외대상

-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및 농·어업 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지원 제외
- 공공주차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3 농어촌 지역(농촌형·영농형·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농촌형 태양광

□ 지원대상

-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 세부 지원기준

- 개인당 설비용량은 총합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농·축산·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 * 공동(조합)은 법령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사전확인 요망(영농조합 지원불가)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이어야 함
- 발전소는 본인 ①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②연접한 읍·면·동 또는 ③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해야 함
- 우사(소사육)는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해당 등록(허가)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우사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농장 사육개체 현황자료 제출
- 우사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발전사업자(임차인)는 거주조건을 만족해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지목) 임야, 전, 답, 과수원 지원 제외. 단, 우사는 상기의 세부 지원기준을 만족할 시 해당 지목 위에 설치 시에도 지원 가능(발전사업허가일 당시 지목 기준)
 - * (예시)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지상형으로 태양광 설치, 과수원 지목의 창고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 모두 지원 제외
- (동·식물시설) 축사(우사는 가능)·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지목과 무관하게 지원 제외

영농형 태양광

□ 지원대상

-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

□ 세부 지원기준

-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관련 법(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된 시점 이후부터 접수 및 지원 가능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지원대상

-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해당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세부 지원기준

- 농업용 저수지^①에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② 발전사업

*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 ②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의2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

- 참여주민 1인당 설비용량은 1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에 따름

* 예시 : 참여주민이 20명인 경우, 2MW 미만 발전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4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태양광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태양광 [우선지원]

※ 주의사항 ※

-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태양광을 이용하여 직접 전력 거래되는 전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이 아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 제6항,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5항

□ 지원대상

- 정기접수 대상 1~3 중 하나에 해당하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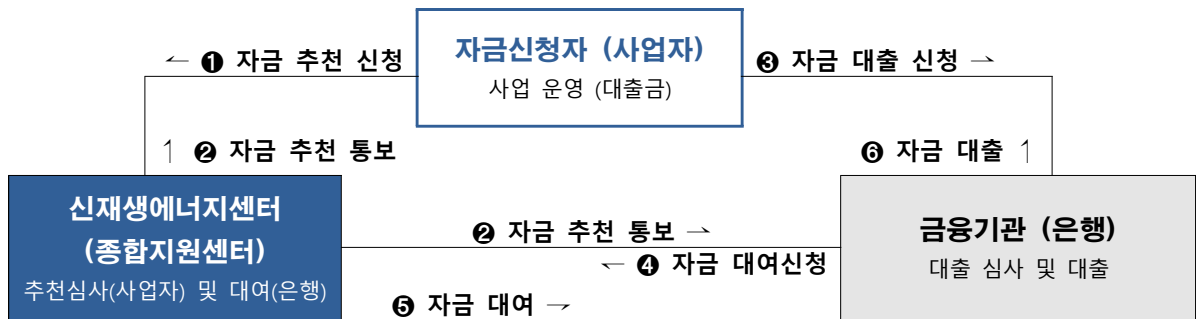
□ 세부 지원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분산에너지실)의 확인을 받아 증빙 제출하여야 함

3

신청방법 및 기간

□ 추천 및 용자 절차



< 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 >

□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누리집 접수

- 접속경로 :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 작성방법 : 자금신청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첨부(제출 서류 목록은 별첨 참조)
 - 본 공고 이후부터 신청서 사전 작성 상시 가능
 - 단, 사전 작성한 신청서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상시지원 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신청기간 무관)

차 수	1차	2차	3차(변경)
신청 대상 (발전소의 경우)	○ 착수일이 '24년 8월 이후이며,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이 착수일 이후인 사업 (상세사항은 본 공고문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참조) - 발전사업인 경우 자금신청일은 공사신고일 이후여야 함		
신청서류 사전작성	'25.3.10.(화)~'25.3.21.(금) (2주간)	'25.4.28.(월)~'25.5.9.(금) (2주간)	상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접수 기간	우선 지원	'25.3.24.(월)~'25.3.28.(금)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25.7.14.(월)~예산마감시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일반 지원	'25.3.31.(월)~'25.4.7.(월)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예 산	총 예산의 90%	총 예산의 10% 및 잔여예산 발생분 (1차접수분 취소 등)	잔여예산 및 추경 발생분

* 차수별 배정 예산은 사업 취소, 포기 및 에너지원별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해당 차수 신청가능 대상이 아닐 경우 반려함

○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

□ 자금 신청 전 확인사항

- 금융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는 자금 신청 전에 본 공고 및 규정,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금융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25.7.31. 이전에 계약 및 착공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25년에 자금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26년에 신청이 불가함
- 금융지원사업은 연내 발전소 준공 및 자금 최종인출이 원칙이며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발전소에 한하여 자금 신청하여야 함 (단,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 단,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 추천일로 4개월 내 최종인출이 원칙이므로 발전소 준공(사용전 검사일정 등), 대출심사 일정 등 고려 후 자금 신청 요망
-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대출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하며,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자금 취급 금융기관(15개소) : 국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은캐피탈
 - * 지역 농·축·수협, 제2금융기관 제외
 - ** 금융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지함
-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신청자는 성능·용량 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 추천 받은 사업자는 발급한 추천서에 기재된 대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추천 조건과 다른 변동사항 발생 시 최종 인출 전까지 변경신청 하여야 함

□ 자금 신청서 반려(보완요청 미대상)

※ 신청 반려 및 보완 내용은 금융지원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자메시지 별도 안내

○ 자금 신청금액이 3,000만원 미만

* 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 기준

○ 자금 지원 대상 부적격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대상” 中 <상세 조건> ③~④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금 추천 신청 서류 미비 (착오·실수 등 불인정)

- 계약서, 공사비 명세서, 공사계획 신고필증, 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미첨부하는 경우

- 공(空) 파일 제출, 타 발전소 자료 제출 등 해당 신청 건과 관계없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이를 충족하지 않는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에 날짜, 날인(도장, 사인 등)이 미기재된 경우

- 신청서 작성 내용과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 자금 추천 포기 및 취소 사업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추천 취소된 경우

- 당해 연도에 추천 포기한 경우

□ 자금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

- 자금신청자는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완 완료하여야 함
 - 3일 이내 미보완 시 자동 반려되며, 보완 횟수는 2회에 한함
- 자금 추천액은 자금 추천 검토 및 심사 결과, 지원 불가 항목 금액 제외, 자금 수요 고려 등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자금 추천서 변경

- 추천서 발급 이후에 시설, 금융기관 등 당초 추천 조건과 다른 불가피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지원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설 변경 등에 따른 총 공사비 감소 등 자금 추천액이 하향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자금 추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증액 불가)

□ 자금 추천서 포기 및 취소

- 최종자금인출 기한 내 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지원 시스템을 통해 추천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출 기한 경과 시 추천이 자동 취소됨
 - 1~3분기 신청 건을 추천 포기한 경우 :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
 - 4분기 신청 건을 추천 포기한 경우* :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
 - * '25년 10월 1일 이후 신청서 제출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추천 포기한 사업
 - 추천 취소된 경우 :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

□ 자금 인출

- 자금 추천 받은 사업자는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액의 30% 이상(단, 하반기에 신청하여 자금을 추천 받은 사업자는 40% 이상)을 **최초자금인출** 하여야 하며 미인출 시 자금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문의 요망
 - * 다만, 계속사업은 추천대상금액 기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또한, 연내에 **최종자금인출**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최종 인출 불가 시 미인출 잔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금 추천 또는 대출 승인이 자동 취소됨(별도 안내 없음)
 - 단,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 연내가 아닌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자금인출을 해야 하므로 최초자금인출 조건은 제외되며, 기한 내 최종 인출 불가 시 미인출 잔액에 대해 자금 추천 또는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 금융기관 대출심사 지연 사유에 한해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인출기한 30일 연장 가능 (단, 하반기에 신청하여 자금을 추천 받은 사업자는 연장 불가)
- 최종자금인출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4조 서식]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후 검토받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설치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태양광 발전의 경우)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증서*
 - * 태양광발전소 자체 재물손해(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와 태양광발전소 운영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자연재해 포함)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만 인정 (상기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CMI보험, CGL보험 등은 불인정)
-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성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전소의 준공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완료 여부 등이 기성 확인에 포함될 수 있음

□ 은행 및 채무자 변경

- 자금신청(사용)자 변경 불가함 (자금 추천서 양도·양수 불가)
 - 다만, 소유자의 사망, 동일 법인 내의 본점·지점 간 양도 사유에 한해서는 추천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공고 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 가능
- 자금 인출 이후에 금융기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간 차입금 인수인계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자금 추천 보류·취소 및 대출 승인의 취소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금 추천 및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이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사유가 발견된 날로부터 3년간 자금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
- 센터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 추천 신청을 반려하거나 관련 민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음

5 기타 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https://www.knrec.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붙임2] 참조)
 - (500kW 이상, 비태양광)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81~0786)

- 붙 임 : 1.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1부.
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1부.
3.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1부. 끝.

□ 개 요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범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의 설치자금*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7] 에 해당 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비, 보수비, 시운전비 등
 -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제20조·제21조에 따른 인증설비·표준화 설비·공용화품목 우선적용 및 시험성적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현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지원 비율 및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등은 자금추천 상황 (업체 수 및 금액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자금추천 심사 절차

-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추천
-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에 따른 서류
 -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변호사 공증 필요)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발급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기타 준수사항

- 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최초자금 인출기한(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수는 예외, 최종인출 기한은 준수

붙임 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지역 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5	02)2071-3808
경기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031)300-9944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YWCA빌딩 3층	032)249-1935	032)249-190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4	0508) 8549-1936
세종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043)901-6014	043)901-6009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323-4406	042)323-4430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23, 6922, 6921	063)906-6998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1	062)602-0098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55 (우동)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8층 806~809호	051)999-6817	051)503-7742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8	053)580-7999
경남	경상남도 성산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600-8121, 8122, 8123, 8124	055)600-819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 KT&G 제주사옥 3층	064)909-0304, 0308	064)909-0309

붙임 3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① [공통] 시설자금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관계기관	비 고
1	신청	자금추천 신청서	신청자	○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2	동의·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시공업체	○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3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신청자, 시공업체	○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신청자	○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5		각서	신청자	○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6		시공업체 확인서	시공업체	○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7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금융기관	○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8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
9-1	자격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해당 시
9-2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 해당 시
9-3		공공기관 확인 서류	신청자	○ 공공기관 해당 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12조 제2항
10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해당 시
11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
12		전기공사업 등록증	시공업체	○ 전기공사업 해당 시 - 「전기공사업법」 제4조
13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설비 공급업체	○ 모듈, 인버터, 접속함 등 KS 인증 대상

번호	서 류		관계기관	비 고
14	분석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 근거	신청자	○ 자금추천 신청서 내 '시설투자 기대효과' 산출근거
15	인 허가 · 신고	발전사업 허가증	산업부, 지자체	○ 발전사업 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16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환경영향평가 포함)	지자체	○ 개발행위허가서, 공작물축조신고필증, 개발행위 면제 관련 지자체 서류 등
17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 서류	산업부, 지자체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
18	계약	계약서	시공업체	○ 전년도 8월 이후 계약
19		견적서 (상세내역집계표)	시공업체	-
20		공사비 명세서	시공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공사비 명세서 -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증빙 및 날인 필수
21	설치	부지 관련 확인 서류	신청자	○ (사업자 소유 시) 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 변천이력 포함) ○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등기부등본
22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	신청자 시공업체	○ 건축물 위 설치 시 제출

①-① [태양광] 시설자금 추가 제출서류

번호	구분	서류	관계기관	비고
1	공통	탄소배출량 검증 인증서	설비 공급업체	○ 해당 기준 충족 탄소배출량 인증서
		보험 또는 공제증서	공제조합	○ 최종 인출 전 제출 ○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 및 설비파손 담보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한전, 신청자	○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제출
2	RE100 태양광	(자가용)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PPA) 장기계약서 (REC) 장기계약서	한전, 신청자	○ (자가용) 신청시점 직전 월까지 1년간 의 전기사용량(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 (PPA, REC) 장기계약 유지 기간 5년 이상 필요
		RE100 등록 증명서	에너지공단, 신청자	○ https://nr.energy.or.kr/RE/CST/login.do > 증명서 발급
3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서류	지자체,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급
		협동조합 정관		○ 협동조합 정관 * 정관 사업내용 중 에너지 사업 명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격거리 준수 증빙서류	지자체	○ 이격거리 준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	지자체	○ 거주지 변천이력 포함 ○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 제출 必
		지분비율확인서	신청자	○ 조합원의 지분별 참여용량 구분 서류 * 협동조합 대표 날인 必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정서	에너지공단	○ (해당되는 경우)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 사업자 지정서 제출
4	고정가격 경쟁입찰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전력거래소	○ 2024년 하반기 경쟁입찰에 따른 계약

번호	구분	서류	관계기관	비고
5	산업시설 태양광 (산단·공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 증명서	산업단지 공단, 신청자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서 - 연내 준공되는 신축일 시 공장신설승인서
6	도심 태양광 (건축물· 시설물)	건축물 대장 또는 시설물 관리대장	신청자	○ 건축물 현황도 포함하여 제출 ○ 시설물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등) 확인 공문 제출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KS 인증서	설비 공급업체	○ 한국산업표준(KS C 8577) 만족 확인
7	농촌형 태양광	농·어업인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지자체,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자	○ 거주지 변천이력 포함
		거주지 요건 증빙서류	신청자	○ 연접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 이내 증빙자료(지도 캡처파일 등)
		우사 건축물 대장	신청자	○ 용자 신청일 2년 이전에 사용승인 ○ 건축물 현황도 포함하여 제출
		농장 사육개체 현황	축협	○ 우사 신청 시에 한함
8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태양광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지원대상 확인 서류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①-② [비태양광] 시설자금 추가 제출서류

번호	구분	서류	관계기관	비고
1	수력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관련 법규에 관한 서류	지자체	-
2	지열설비 수열설비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지열 설비 설치 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	지자체	○ 지열이용검토서는 최초자금인출일 전까지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3	태양열설비	신재생설비 인증서(KS)	신청자	○ 인증서 없을 시, 국가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4	바이오 가스/ 바이오 생산·이용 설비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증	지자체	○ 신규업체는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 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 가능
5	신재생 에너지 기술 사업화	사업계획서	신청자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비고 참조	신청자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 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자체개발내역서 포함)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 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 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기술개발보고서 등	신청자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 명하는 자료

② 생산, 운전자금 분야 제출 서류

번호	구분	서류	관계기관	비고
1	공통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
		공장등록증	지자체	○ 신설기업이 생산자금을 신청한 경우 공장신설승인서 제출
		재무제표 및 매출실적 확인서	신청자	○ (운전자금)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50% 이내 범위 내 지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자금사용자, 시공업체	○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 뉴스 > 사업공고 참조
2	생산자금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공정설명 자료	신청자	-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신청자	-
		기대효과	신청자	-
		부지관련 확인서류	신청자	-
3	운전자금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 기업부	-